

의안번호	제846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1년 10월 1일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846
----------	-----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1일

제안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 재단법인 충북여성재단
- 출연목적 및 필요성
 -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17. 2. 17)된 기관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및 교육, 여성·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출연 예정금액 : 1,578,814천원(도비100%)
- 출연 내역 : 충북여성재단 운영비, 사업비
- 기대효과
 - 도민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
 - 여성·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기타

1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여성정책팀	이남희	우영미	최영민	220-3912

기관명	충북여성재단				
출자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 장 : 이시종 ○ 일반현황 : (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현원/정원) 13/14 (주요사업)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가족 역량강화 교육 여성·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성주류화 과제 컨설팅 				
출자출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1,578,814천원(도비 1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액	2022년 예산액*	재원별	
			계	도비출연금	순세계잉여금
계	1,423,342	1,681,379	1,681,379	1,578,814	102,565
※ 수탁기관 수익금 제외 :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출자출연 필요성	○ 지역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총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도감독 부서인권 (중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여성재단은 대내외 여성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성평등 충북도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연구를 비롯, 충북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2022년도에는 도 파견공무원(2명) 최종 복귀에 따른 전문인력 대체채용(2명)과 함께 도내 여성인재 DB구축, 재단사업 홍보,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사군 교육 네트워크 사업, 여성정책 아카데미, 여성마을기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신규인력(2명) 증원 등, 충북여성재단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시기로, 이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인원 및 조직현황 등) 3. 출연사업계획서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 경영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치 등 명확히 설정, 설정과정에 전 구성원 참여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및 비대면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등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은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의 연구개발과 충북여성의 능력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17년 설립, '18년~'20년은 출범 이후 재단 조직 안정화 및 정착 시기였으며, '21년 이후 본격적인 파견공무원 복귀와 함께 충북여성재단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여성의 권익증진, 교육·연구,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특히, 재단운영 기본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도 여성정책 발전을 이끌어 나갈 기반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이 절실하므로 원안의결을 건의드립니다.

3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내역	2021년 예산액(최종) (C)	2022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충북여성재단 운영	1,317,177	1,578,814	1,578,814	-	261,637

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여	여	부	여	여	여	여

1-2 출자출연 기관현황

충북여성재단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전화번호 : 043-285-2421			
주요연혁	- '17. 2. 17 : 충북여성재단 설립		기관형태	출연기관(재단법인)			
인원현황	계		정규직	2개 센터			
	33		14	19			
임원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기간			
	이사장	이○○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박○○	충북 여성재단 대표이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신○○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재임기간			
	선임직이사	고○○	전 충청북도 여성기획팀장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금○○	옥천자원봉사 센터장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김○○	설성어린이집 원장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김○○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박○○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박○○	충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심○○	충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연○○	충북기업진흥원 원장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유○○	동양일보 상임이사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이○○	충북여성정책포럼 대표	2021. 02. 17 - 2023. 02. 16			
	선임직이사	정○○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장	2021. 02. 17 - 2023. 02. 16			
	당연직감사	이○○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재임기간			
선임직감사	이○○	태성회계법인 대표	2021. 02. 17 - 2023. 02. 16				
조직	<pre> graph TD A[이사장(도지사)] --> B[대표이사(상근)] B --> C[이사(13명)] B --> D[감사(2명)] B --> E[사무처장] E --> F[경영지원팀(3명)] E --> G[교육사업팀(4명)] E --> H[정책연구팀(5명)] G --> I[여성긴급전화 1366] G --> J[성별영향평가센터] </pre>						
주요기능	- 여성정책연구·개발,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 지역 여성리더십 향상 및 역량강화,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10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31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A=B+C)	100
	예산액	1,288	1,393	1,423		부채(B)	-
	지출액	1,205	1,205	1,317		자본(C)	1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149			2,202		△53	

1-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충북여성재단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출연	1,578,814천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민관 소통 역할 수행
- 지역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의 중심 기능 수행

□ 출연개요

- 사업명 : 충북여성재단 운영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 1,682백만원(출연금 1,57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03백만원)
- 주요내용 : 충북여성재단 교육 및 연구사업, 성평등·일자리 사업
- 출연근거 :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 산출기초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1,682		
운영재원	1,675		
인건비	956	- 재단 직원(16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본급 및 수당, 퇴직급여 등)	
경비	259	- 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 집기구입 등	
사업비	460	- 교육운영, 정책연구,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예비비	7		

※ 수탁기관(성별영향평가센터·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사업비 별도

□ 기대효과

- 지역 여성들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
- 여성·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충북여성재단은 전액 도비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도비 출연금은 재단 존립과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금액임.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 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